

동아리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요건) 동아리등록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이 학칙 제15장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4.03.01>
2. 활동범위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 해당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이념에 찬동하는 15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신규동아리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4. 활동범위가 특별한 경우에는 3호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단 학생처장 인준시)

제3조 (신규등록)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3월 31일까지 동아리연합회를 통해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아리등록신청서 1부(별지서식1)
2.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별지서식2)
3. 동아리 임원 및 회원명단(행사 참가자 명단) 1부(별지서식3)
4. 연간 활동계획서(신년도활동계획서) 1부(별지서식5)
5. 회칙2부

제4조 (재등록) 재등록을 원하는 동아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를 통해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아리등록신청서 1통(별지서식1)
2. 지도교수 취임승락서1통(별지서식2)
3. 동아리 임원 및 회원명단 1부(별지서식3)
4. 전년도 실적보고서 1부(별지서식4)
5. 연간 활동계획서 1부(별지서식5)
6. 회칙 2부

제5조 (존속기간) 동아리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 년도에 국한된다.

제6조 (승인) 제3,4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로 인정한다.<개정 2017.10.01.>

제7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받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 동아리를 초과하여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14.03.01>
- ③ 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의 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하여야 한다.
-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지도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해당동아리는 14일 이내에 후임지도교수를 추대하여

지도교수 취임승락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동아리의 활동)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또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행사는 제10,11조에 의한 동아리활동계획서를 학생처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③ 모든 게시물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게시물(공고문, 대자보, 포스터 등)은 지정게시판에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게시물 부착 시 학생처, 대학원교학과, 교음과사무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4. 게시물의 규격은 전지 1/2 이내로 한다.
5. 현수막은 지정현수막 걸이에만 게시 할 수 있으며, 정문위에는 학교의 전체 행사인 경우에만 게시 할 수 있다.
6. 게시물의 수량은 교내에 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처, 대학원교학과, 교음과사무실과 협의하여 수량을 추가 할 수 있다.
7. 게시 기간이 지난 게시물에 대하여는 부착한 동아리가 직접 철거하여야 한다.

④ 매학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각 동아리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

제9조 (동아리활동허가원의 신청 절차) 동아리의 모든 행사는 동아리 대표자가 지도교수로부터 동아리활동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연합회를 거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아리활동허가원 신청기일) ① 동아리활동계획서는 행사7일 이전에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행사14일 이전에 동아리활동계획서 및 행사 내용 설명서, 참가교 동의서를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방학중활동) ① 방학 중 활동은 방학시작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연합회를 경유하여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방중활동 계획서(별지서식8)
2. 예산서
3. 참가학생 명단(별지서식3 준용)

② 방학 중 해외 활동을 원할 경우 출국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 연합회를 경유하여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활동 계획서(별지서식10)
2. 예산서
3. 참가학생명단(별지서식3)
4. 서약서(별지서식9)

③ 동아리활동을 마친 동아리는 방중활동 실적보고서(별지서식11), 자체평가서를 동아리방중활동결산보고서(별지서식12) 및 영수증과 함께 개강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격상실)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생

활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교 설립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3. 지도교수 사임서가 수리된 후 14일 이내에 후임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4. 제14조에 의한 동아리실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5.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회원수가 규정에 미달된 경우
- ②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가 서명한 해체 결의서와 해체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동아리활동지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동아리활동계획서를 학생처에 제출한 경우 활동내용,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아리활동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동아리실 및 비품관리) 동아리실 및 동아리실에 비치된 비품의 관리는 해당동아리가 “학생회실 비품관리 지침” 및 “학생단체실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현 동아리는 제2조 3항은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지도교수겸직에 대한 경과조치) 현 동아리는 7조②항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동아리등록신청서>

담 당	주 입	학생과장	학생처장	총 장
			전 결	

동아리 명칭		지도교수	(인)
대표자성명		학과 / 학년	학과 학년
연 락 처	이동통신	전화번호	() -
활동목적			
정기모임	주 ()회 월 ()회		
소요예산	(년간소요예산)		
조달방법			
회원명단	* 학과/학년/성명 15명 이상 명시하여 2부 별첨(신규동아리는 20명 이상)		
회 칙	* 2부 별첨		
활동계획서	* 2부 별첨		

1. 본 신청서와 별첨서류를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고 동아리연합회의 심사 후 1부씩 학생처로 제출한다.
2. 모든 활동은 별도양식(학생처 비치)에 의거 지도교수의 승인 후 학생처에 제출하고 시행한다.
3. 대표자 또는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는 학생처에 신고한다.

동아리연합회 심 사 필	회 장

20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2>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동아리명 :

성 명 :

본인은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동아리 _____
의 제반활동을 지도하고자 지도교수 취임을 승낙합
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 장 귀하

<별지서식4>

전년도 실적서 보고서

시행일자	행사명	행사내용	장소	참가인원	비고

<별지서식5>

연간 활동 계획서(신년도활동계획서)

시행일자	행사명	행사내용	장소	소요예산	비고

<별지서식6>

지도교수 사임서

동아리명 :

성 명 :

본인은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동아리 _____
를 지도하여 왔으나, _____의사유로 인
하여 20 년 월 일 부로 지도교수를 사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 장 귀하

<별지서식7>

동 아 리 활 동 계 획 서

결 제	담 당	주 임	학 생 과 장	학 생 처 장	총 장

접수번호:

접수일: 20 . .

동아리명		지 도 교 수	
대 표 이 름		학 과 학 년	
활 동 제 목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활 동 일 시		연락처	이동전화
활 동 장 소		참 가 인 원	
수 업 관 계 (상세하게 기록)			
활 동 내 용			
소 요 예 산		조 달 방 법	
협 조 사 항			

위와 같이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자 :

서울신학대학교 총장귀하

1. 위 계획서는 활동 최소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 후 학생처에 제출한다.
2. 활동내용과 수업관계란은 가능한한 상세하게 작성한다.
3. 협조란에는 학교로부터 협조받기 원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하계,동계) 방학 중 활동 계획서

구 분	세 부 사 항
목 적	
목적지 (경유지를 상세히 표시, 경유지마다 체류기간 표시)	
활동내용	
준비사항	
협조사항	

1. 위 계획서는 활동 최소 14일 전까지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 후 학생처에 제출한다.
2. 협조란에는 학교로부터 협조받기 원하는 사항을 기재 한다.

200 년 월 일
동아리회장(대표) (인)

서 약 서

(_____ 과 _____ 학년)은(는) 20 년 (하계,동계) _____ 에 참가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 년 (하계,동계) _____ 기간 동안 현지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 20 년 (하계,동계) _____ 기간 동안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현지 에서 발생한 사고, 풍토병 및 전염병에 대하여는 해당보험 약관의 피해 보상규정에 따를 것이며 약관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신체적, 정신적 상해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금번 (하계,동계) _____ 기간 동안 현지인술자, 선교사님들과 간사 및 팀장들의 현지 사역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현지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팀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이유 없는 비협조, 개별 행동 및 흡연, 이성교제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본인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동 의 서

본인은 20 년 (하계,동계) _____ 활동에 참가하는 _____ 의 보호자 (아버지, 어머니) 로서 상기 서약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보호자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하계,동계)방학 중 해외 활동 계획서

구 분	세 부 사 항
목 적	
목적지 (경유지를 상세히 표시, 경유지마다 체류기간 표시)	
활동내용	
준비사항	
협조사항	

1. 위 계획서는 활동 최소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 후 학생처에 제출한다.
2. 협조란에는 학교로부터 협조받기 원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200 년 월 일
동아리회장(대표)

(인)

<별지서식11>

동아리방중활동실적보고서

결 재	담 당	주 임	학생과장	학생처장	총 장
				전 결	

접수번호:

접수일: 20 . . .

단 체 이 름		지 도 교 수	(인)
대 표 이 름		학 과 학 년	
활 동 내 용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학생단체활동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귀하

1. 본 보고서는 단체활동 후 7일 이내로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에 제출한다.
2. 학생단체활동실적보고서 제출시에는 학생단체활동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별지서식12>

동아리방중 활동결산보고서

결 재	담 당	주 임	학생과장	학생처장	총 장
				전 결	

접수번호:

접수일: 20

단 체 이 름		지 도 교 수	(인)
대 표 이 름		학 과 학 년	
결 산 내 용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학생단체활동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대표자 :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귀하

1. 본 보고서는 단체활동 후 7일 이내로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에 제출한다.
2. 학생단체활동결산보고서는 학생단체활동실적보고서 제출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